

2021년 9월 8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만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2129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4호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소관 변경으로 위원회의 위원장 등 관련 규정을 개정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추가 및 개정

2. 주요내용

〈조례 개정사항〉

-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당연직 위원을 변경
 - 위 원 장: 기존) 행정부시장 → 변경) 소방안전본부장
 - 부위원장: 기존) 소방안전본부장 → 변경) 소방행정과장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추가
 - “순직소방공무원” 직무범위에 「소방기본법」 제16조의 3(생활안전활동) 추가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인용조문 변경
 - 기존) 「공무원연급법」 제29조 및 제30조 → 변경)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시행규칙 개정사항〉

-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변경
 - 기존) 소방안전본부장 → 변경) 소방행정과장

3. 의견 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참조:소방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will003@korea.kr
-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16층 안전보건팀(치평동, 소방행정과)
- 3) 팩스 : 062-613-8019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소방행정과(☎062-613-80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 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6조의2와”를 “제16조의2, 16조의3과”로, “소방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원 연급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부시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행정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 ----- ----- 제16조의2, 16조의3과 ----- ---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 -----
2. “공사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급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무원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소방안전본부장 ----- ----- 소방행정과장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략)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 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소방행정과장 ----- -----.
③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이 되며 서기는 소속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③ ----- 업무팀장 ----- -----.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5호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소관 변경으로 위원회의 위원장 등 관련 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 시청장(葬) 장례위원회 부위원장을 변경
- 기존) 행정부시장 → 변경) 소방안전본부장
- 시청장(葬) 집행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변경
- 위 원 장: 기존) 소방안전본부장 → 변경) 소방행정과장
- 부위원장: 기존) 소방행정과장 → 변경) 안전보건팀장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소방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will003@korea.kr
-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16층 안전보건팀(치평동, 소방행정과)
- 3) 팩스 : 062-613-8019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소방행정과(☎062-613-80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 www.gwangju.go.kr](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 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광주광역시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행정과장**”으로, “**소방행정과장**”을 “**안전보건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제3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청장(葬)의 경우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위원은 광주광역시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 ----- ----- 소방안전본부장 -----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집행위원회의 구성·임무) ① (생략)	제4조(집행위원회의 구성·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청장(葬)의 경우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이 되며, 위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집행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 ----- 소방행정과장 ----- 안전보건팀장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신규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제3조(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시험의뢰서 제출 시 광주광역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u>광주광역시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6호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9. 2.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례의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 원칙규정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조례개정

2. 주요내용

가. 납부방법 (안제3조제2항)

- (현행) 광주광역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변경) 광주광역시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 (참조: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 전화 613-7505, FAX 613-7519, E-mail : clsrn2me@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를 “광주광역시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7호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게 규정된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이내)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90일 이내)로 규정한 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a8884@korea.kr

○ 일반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5층 문화도시정책관

○ 팩스(fax) : 062-613-3429

4. 기타사항

- 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실(☎ 062-613-3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광주광역시 조례 제5571호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의신청 등) ① 설치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등) ①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8호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부합하고자 조례 개정
- 나.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및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사업 등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개정 :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 광주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를 조례로 위임
- 나. 주택 중개보수 효율 개선(별표)
 - 국토부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부합하도록 9억 이상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요율 인하
- 다. 부동산 중개 지원 사업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4조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전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skyrose90@korea.kr
 - 2) 주소 : 광주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3) 팩스 : 062-613-4569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전화: 062-613-45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전부 개정(안)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을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주택”을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①시장은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및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2. 법 제34조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
 3.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 조례의 효력과 한도 등에 따른다.

별표를 아래와 같이 한다.

<별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중개보수) ①주택(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중개보수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p> <p>② (생략)</p>	<p>광주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p> <p>제2조(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p> <p>②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4조(지원사업 등) ①시장은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및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p> <p>2. 법 제34조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p> <p>3.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p> <p>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p>

부동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종별	거래가액	상한요율한도	한도액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24호

도시관리계획(전평제수변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전평제수변공원 조성계획)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서구 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 9. 1.

광주광역시장

I. 전평제수변공원 조성계획 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구분	공원번호	공원의종류	공원의명칭	면적(㎡)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04	수변공원	전평제공원	44,000.0	44,000.0	44,000.0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519-1일원	-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 ' 06. 7. 15(광주광역시고시 제105호)
- 조성계획 결정 : ' 12. 06. 20.(광주광역시 고시 제90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변경요청부서 :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 변경 사유 : 공원등 추가설치로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 경관조명 및 상징조형물 설치를 통해 지역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법적 검토사항

구분	기정	변경
시설률(법정40%이하)	10.20%	10.20%
건축률(법정15%이하)	0.33%	0.33%

II. 도시계획시설(전평계수변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44,000.0	44,000.0	143.7	143.7	143.7	143.7	
시설소계		4,487.0	4,487.0	143.7	143.7	143.7	143.7	시설률:10.20% 건축률:0.33%
도로 및 광장	도로 및 광장	2,390.0	2,390.0	-	-	-	-	
주요시설	딩글트렐리스	-	-	-	-	-	-	
유양시설	인공섬	434.0	434.0	54.0	54.0	54.0	54.0	
유회시설	어린이놀이터	254.5	254.5	-	-	-	-	
운동시설	썬볼링머신	-	-	-	-	-	-	
편의시설	수월당	150.5	150.5	54.0	54.0	54.0	54.0	
화장시설	화장실	203.0	203.0	35.7	35.7	35.7	35.7	
관리시설	수목보호덮개	-	-	-	-	-	-	
기타시설	입석	1,055.0	1,055.0	-	-	-	-	
녹지		39,513.0	39,513.0					녹지율 : 89.80%

2.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물(㎡)		수량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계		44,000.0	143.7	143.7	3동(967기)				
					44,000.0	143.7	143.7	3동(110기)				
	기정	변경	시설소계		4,487.0	143.7	143.7	3동(967기)	시설율 10.20%			
					4,487.0	143.7	143.7	3동(110기)	시설율 10.20%			
도로광장	기정	소계	도로	공원 내	2,390.0	-	-	-				
					1	광장	공원 내	712.0	-	-		
					1-1	광장-1	매월동 519-1유	659.0	-	-		
					1-2	광장-2	매월동 519-1유	53.0	-	-		
					조경	기정	변경	소계	공원 내	-	-	-
1	딩글트렐리스	공원 내	-	-	-					(2기)		
1-1	딩글트렐리스-1	매월동 519-1유	-	-	-					(1기)	L=17m W=2.5m	
1-2	딩글트렐리스-2	매월동 519-1유	-	-	-					(1기)	L=30m W=2.5m	
2	목교	공원 내	-	-	-					(4기)		
	기정	2-1	목교-1	매월동 519-1유	-	-	-	(1기)	L=33m W=1.8m			
					2-2	목교-2	매월동 519-1유	-	-	-	(1기)	L=27m W=1.8m
					2-3	목교-3	매월동 519-1유	-	-	-	(1기)	L=16m W=1.8m
					2-4	목교-4	매월동 756-7도외	-	-	-	(1기)	L=4m W=1.2m
	기정	3	수변관찰대	매월동 519-1유	-	-	-	(2기)	A=204.0㎡			
					3-1	수변관찰대-1	매월동 519-1유	-	-	-	(1기)	A=415.0㎡
					3-2	수변관찰대-2	매월동 519-1유	-	-	-	(1기)	A=259.0㎡

유양시설	기정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물(㎡)			수량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연면적				
	기정	2	인공섬	매월동 519-1유	115.0	-	-	-	(1기)	A=12㎡		
					3	휴게쉼터	공원 내	319.0	-	-	-	(1기)
	변경	소계			434.0	54.0	54.0	1동(43기)				
					434.0	54.0	54.0	1동(54기)				
					3-1	휴게쉼터-1	매월동 519-1유	60.0	-	-	-	
					3-2	휴게쉼터-2	매월동 519-1유	259.0	-	-	-	
					4	파고라	공원 내	-	-	-	-	(4기)
					5	등벤치	공원 내	-	-	-	-	(6기)
					6	평벤치	공원 내	-	-	-	-	(30기)
					7	한식경자	휴게쉼터-2 내	-	54.0	54.0	-	1동
					8	테이블벤치	녹지 내	-	-	-	-	(3기)
					신설	2	다자인벤치	매월동 519-1유	-	-	-	-
신설	3	호수섬벤치	매월동 519-1유	-	-	-	-	(7기)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물(㎡)		수량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유회시설	기정	소계			254.5	-	-	(1기)								
					4	어린이놀이터	공원 내	254.5	-	-	-					
					9	조합놀이대	어린이놀이터 내	-	-	-	(1기)					
운동시설	기정	소계			-	-	-	(6기)								
					10	썬볼링머신	광장-1 내	-	-	-	(1기)					
					11	스윙위커머신	광장-1 내	-	-	-	(1기)					
					12	워킹트레이너머신	광장-1 내	-	-	-	(1기)					
					13	바디스윙	광장-2 내	-	-	-	(1기)					
					14	에어워킹	광장-2 내	-	-	-	(1기)					
요양시설	기정	소계			150.5	54.0	54.0	1동								
					5	수월당	매월동 519-1유	150.5	54.0	54.0	1동					
편의시설	기정	소계			203.0	35.7	35.7	1동								
					6	화장실	매월동 756-8잠	203.0	35.7	35.7	1동					
					관리	기정	변경	소계		-	-	-	(34기)			
					9					수목보호덮개	공원 내	-	-	-	(15기)	
					10					종합안내판	공원 내	-	-	-	(2기)	
11	공원안내판	공원 내	-	-	-					(1기)						
12	휴지통	공원 내	-	-	-					(2기)						
기타시설	기정	20	조명등	공원 내	-	-	-	(14기)								
					20	조명등	공원 내	-	-	-	(32기)					
기타	기정	소계			25.5	11.30	11.30	(4기)								
					7	점근도로 및 보도	공원 내	1,031.5	-	-	-					
					8	입석	공원 내	23.5	-	-	-	(47기)				
					8-1	입석-1	매월동 519-1유	18.0	-	-	-	(1기)				
					8-2	입석-2	매월동 519-1유	2.5	-	-	-	(1기)				
					8-3	입석-3	매월동 519-1유	1.5	-	-	-	(1기)				
					8-4	입석-4	매월동 519-1유	1.5	-	-	-	(1기)				
					녹지	기정	-	녹지		39,513.0				녹지율 89.80%		
변경	-	39,513.0								녹지율 89.80%						

3.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	원장(㎡)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1,678.0				
기정	소로	3	소계			1,678.0				
기정		1	4.0	8.5	34.0	진입로	매월동 519-1유	매월동 519-1유		
기정		2	3.0	7.0	21.0	진입로	매월동 756-9도	매월동 756-9도		
기정		3	2.5	4.0	10.0	진입로	매월동 756-9도	매월동 756-9도		

기정	4	2.0	4.5	9.0	진입로	매월동 756-9도	매월동 756-9도	
기정	5	2.0	3.0	6.0	연결로	매월동 750-1구	매월동 756-7도	
기정	6	2.0	151.0	302.0	산책로	매월동 519-1유	매월동 519-1유	
기정	7	2.0	105.0	210.0	산책로	매월동 519-1유	매월동 519-1유	
기정	8	2.0	429.5	859.0	산책로	매월동 519-1유	매월동 519-1유	
기정	9	2.0	5.5	11.0	연결로	매월동 519-1유	매월동 519-1유	
기정	10	1.5	140.0	210.0	산책로	매월동 519-1유	매월동 519-1유	
기정	11	1.0	6.0	6.0	연결로	매월동 756-9도	매월동 519-1유	

※관련도면은 홈페이지 참조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25호

도시관리계획(우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우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북구 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 9. 6.

광 주 광 역 시 장

I. 우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개요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공원 번호	공원명	공원의 종류	위치	면적(㎡)			공원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55	우산근린공원	근린공원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28-1번지 일원	136,050	-	136,050	1975.02.18	

2. 공원이정 및 변경현황

- 공 원 지 정 일 : 1975. 02. 18.(건고 제24호)
- 공원조성계획수립 : 1990. 08. 22.(건고 제526호)
- 공원면적변경결정 : 2020. 01. 14.(광고 제2020-13호)
- 최종조성계획 : 2020. 10. 28. (광주광역시 고시 2020-441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

- 변경요청부서 : 광주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 변경내용 : 생태탐방로 등 시설물 설치 608.3㎡
- 변경사유 : 2021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내 생태 환경 복원 추진

4. 법적 검토사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설물(법정 40%이하)	32.54%	32.98%	
설치제한면적(법정 20%이내)	21.75%	21.46%	2005.12.30. 공원시설 설치면적 개정전 결정 사항
건폐율(법정 10%이하)	2.45%	2.45%	

II. 우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총괄표(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136,050		3,327.94	21,502.12	136,050		3,327.94	21,502.12	
공원부지 소계	136,050		3,327.94	21,502.12	136,050		3,327.94	21,502.12	
시설소계	44,264.8				44,873.1				증608.3㎡
기반시설	소계	14,728.4			15,083.5				증355.1㎡
	도로	8,951.8			9,248.9				증297.1㎡
	광장	5,776.6			5,834.6				증58.0㎡
	주차장	1,264.0			1,432.8				증168.8㎡
휴양시설	1,328.6			1,413.0				증84.4㎡	
유역시설	1,001.0			1,001.0					
운동시설	9,630.3	480	11,910.43	9,630.3	480	11,910.43			
교양시설	13,713.6	2,365	9,108.75	13,713.6	2,365	9,108.75			
편익시설	2,598.9	482.94	482.94	2,598.9	482.94	482.94			
공민관									
도시농업시설									
녹지및기타	91,785.2				91,176.9				감 608.3㎡

시설률(법정 40%)	$(44,264.8 \div 136,050) \times 100 = 32.53\%$ (공원면적의 40%이하)	$(44,873.1 \div 136,050) \times 100 = 32.98\%$ (공원면적의 40%이하)	(시행규칙 11조) [별표4]
시설물 설치 제한 면적(법정 20%)	$(9,630.3 \div 44,264.8) \times 100 = 21.75\%$ (시설부지면적의 20% 이내)	$(9,630.3 \div 44,873.1) \times 100 = 21.46\%$ (시설부지면적의 20% 이내)	2005.12.30. 공원시설 설치면적 개정전 결정 사항 (조례67조 5항) [별표 16의 2]
건폐율(법정 10%)	$(3,327.94 \div 136,050) \times 100 = 2.45\%$ (공원면적의 10% 이내)	$(3,327.94 \div 136,050) \times 100 = 2.45\%$ (공원면적의 10% 이내)	

2.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부호	시설명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공원 전체면적 합계				136,050	3,327.94	21,502.12	120,188.3	165.94	2,246.97	
공원 부지면적 총계				136,050	3,327.94	21,502.12	120,188.3	165.94	2,246.97	
공원내 시설부지면적 소계				44,264.8	3,327.94	21,502.12	40,818.7	165.94	2,246.97	
소계				44,264.8			소계	44,873.1		증 608.3
도로				8,951.8			도로	9,248.9		증 297.1
광장				5,776.6			광장	5,834.6		증 58.0
1-1	입구	우산동 574-6	27.3			1-1	입구	우산동 574-6	27.3	
-	-	-	-			1-2	입구	우산동 2163로	8.3	증 8.3
1-3	입구	우산동 150	126.3			1-3	입구	우산동 150	126.3	
1-4	입구	우산동 686-1도	246.3			1-4	입구	우산동 686-1도	246.3	
1-5	입구	우산동 676	776.9			1-5	입구	우산동 676	776.9	
1-6	휴게	우산동 150	1,048.0			1-6	휴게	우산동 150	1,048.0	
1-7	휴게	우산동 680	781.8			1-7	휴게	우산동 680	781.8	
1-8	-	-	-			1-8	입구	우산동 1150	49.7	증 49.7
1-9	신륵	우산동 574-9	1,398.0			1-9	신륵	우산동 574-9	1,398.0	
1-10	신륵	우산동 574-7	243.0			1-10	신륵	우산동 574-7	243.0	
1-11	신륵	우산동 141	135.0			1-11	신륵	우산동 141	135.0	
1-12	입구	우산동 574-4	99.0			1-12	입구	우산동 574-4	99.0	
1-13	입구	우산동 229-3	895.0			1-13	입구	우산동 229-3	895.0	

당초		37	3.0	34.0	102.0	연결로	229-1답	686답	
당초			603.9	1,174.6					
변경			670.8	1,423.2					증248.6㎡
당초	1		2.0	43.3	86.7	연결로	152전	151대	
변경	1		2.0	36.2	187.1	연결로	154-2전	142전	증100.4㎡
당초	2		2.0	29.0	58.0	연결로	574-7답	574-7답	
당초	3		2.0	76.2	144.1	연결로	574-6답	86답	
당초	4		2.0	13.0	26.1	연결로	830	140	
신설	5		1.2	39.5	49.5	연결로	155-1인	142전	증 49.5㎡
당초	6		2.0	72.7	147.0	연결로	산31-1입	140전	
당초	7		2.0	127.9	269.4	연결로	86답	86답	
당초	8		1.5	35.1	52.7	연결로	574-9답	574-8답	
당초	9		1.5	51.7	77.6	연결로	574-7답	574-8	
당초	10		2.0	100.0	207.0	연결로	230-1답	221-3답	
당초	11		2.0	23.0	49.0	연결로	230-11답	230-11답	
당초	12		2.0	15.0	33.0	연결로	229-3답	229-1답	
당초	13		1.4	17.0	24.0	연결로	230-1답	230-1답	
신설	14		2.0	47.6	98.7	연결로	155-1인	142전	증98.7㎡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26호

도시관리계획(시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민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에너지산업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서구 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 9. 1.

광 주 광 역 시 장

I. 도시관리계획(시민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공원번호	공원의 종류	공원의 명칭	면적(㎡)	위 치	비 고
167	근린공원	시민공원	170,384.90	서구 치평동 1162번지 일원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 1994. 11. 12. (광고 제141호)
- 조성계획결정 : 1994. 11. 12. (광고 제141호)
- 최종조성계획 : 2021. 6. 4. (광고 제203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변경 사유 : 에너지파크 안내관 시설물 설치, 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성계획 변경
 -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원 종합 안내관 설치
 - 장애인단체 의견 반영으로 장애인 동선 확보를 위해 녹지를 광장으로 변경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기정	변 경	비 고
시설률(법정 40%이하)	37.11%	37.12%	
건폐율(법정 10%이하)	3.23%	변경없음	
설치제한시설률(20%이하)	40.06%	40.04%	해당시설(운동시설, 문화회관)변경없는 시설부지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

II. 도시관리계획(시민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총괄표

시설 구분	시설내 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물동수 (공작물)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총 계	170,384.90	170,384.90	5,513.45	5,513.45	13,655.59	13,655.59	14동 (685기)	
공원 시설	소 계	63,226.58	63,254.85	5,513.45	5,513.45	13,655.59	13,655.59	14동 (685기)	시설용 기정 37.11% 변경 37.12%
도로 및 광장	소 계	22,659.57	22,687.84	-	-	-	-	-	
유양 시설	플랜터	-	-	-	-	-	-	100기	
유회 시설	평의자	75.00	75.00	-	-	-	-	81기	
유회 시설	물놀이 시설	1,030.33	1,030.33	-	-	-	-	14기	
운동 시설	종합운동장	18,718.50	18,718.50	1,041.75	1,041.75	3,337.35	3,337.35	1동	
교양 시설	문화회관	12,193.68	12,193.68	3,697.87	3,697.87	9,509.91	9,509.91	3동(37기)	
편의 시설	화장실	7,435.50	7,435.50	259.78	259.78	294.28	294.28	7동(40기)	
안내 시설	안내관	1,114.40	1,114.40	514.05	514.05	514.05	514.05	3동(403기)	3기 증설
기타 시설	String Wall	-	-	-	-	-	-	10기	
녹지 (호수)	-	107,158.32	107,130.05	-	-	-	-	-	녹지율 기정 62.89% 변경 62.88%

2.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 구분	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건물동수 (공작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기정	총 계			170,384.90	5,513.45	13,655.59	14동(681기)	
	변경	총 계			170,384.90	5,513.45	13,655.59	14동(684기)	
공원 시설	기정	소 계			63,226.58	5,513.45	13,655.59	14동(681기)	
	변경	소 계			63,226.58	5,513.45	13,655.59	14동(684기)	
도로 및 광장	기정	1	도로	전 지역	14,427.9	-	-	-	
	기정	2	광장		8,231.67	-	-	-	
	변경	2	광장		8,259.94	-	-	-	
	기정	소계			-	-	-	(100기)	
	기정	①	플랜터	전 지역	-	-	-	-	37기
	기정	②-1	헬터(D형)	광장(내)	-	-	-	-	1기
	기정	②-2	헬터(E형)	광장(내)	-	-	-	-	1기
	기정	3	호수	-	-	-	-	-	녹지(내)포함
	기정	②	쿨링포그	-	-	-	-	-	58기
	기정	②	ENERGY POLE	광장(내)	-	-	-	-	1기
조경 시설	변경	②	에너지 사이너지	광장(내)	-	-	-	-	1기 명칭변경
	기정	⑤	에너지 분수	호수(내)	-	-	-	-	1기
	기정	⑥	SOLAR TREE	호수(내)	-	-	-	-	1기
	기정	소계			75.00	-	-	-	(81기)
	기정	③-1	평의자(C형)	전 지역	-	-	-	-	2기
	기정	③-2	연석의 헬터(E형)하부		-	-	-	-	64기
	기정	③-3	통들의 자(B형)	광장(내)	-	-	-	-	3기
	기정	③-4	통들의 자(B형)	광장(내)	-	-	-	-	3기
	기정	14	데크쉘	광장(내)	75.00	-	-	-	1기
	기정	②	파고라	광장(내)	-	-	-	-	8기
유회 시설	기정	소계			1,030.33	-	-	-	(14기)
	기정	15	물놀이 시설	광장(내)	190.00	-	-	-	1기
	기정	16	아외놀이 시설	녹지(내)	26.00	-	-	-	1기
	기정	⑥	에너지 놀이마당		814.33	-	-	-	12기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시설면적(㎡)	건축면적(㎡)		건물층수(공작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놀이시설	(내)					
	기정		소계		18,718.50	1,041.75	3,337.35	1동	
	기정	4	종합운동장		13,300.00	-	-	-	트랙면적
	기정	④-3	테니스장		3,177.90	-	-	-	5면(23.8m×11m)
	기정	④-5	인공암벽등반(A형)		475.50	-	-	-	각 1개소
	기정	④-6	인공암벽등반(B형)			-	-	-	각 1개소
	기정	④-7	인공암벽등반(C형)		30.00	-	-	-	1개소
	기정	20	실내체육관		1,078.34	1,041.75	3,337.35	1동	
	기정	④-9	인공암벽등반(D형)		656.76	-	-	-	1개소
	기정		소계		12,193.68	3,697.87	9,509.91	3동(37기)	
교양시설	기정	5	문화회관		6,611.00	1,674.27	6,684.31	1동	
	기정	6	엑스포주거역상관자연보호현장비		3,030.00	1,030.00	1,832.00	1동	
	기정	⑤	하나됨을 위한 사랑의 화합대		8.25	-	-	1기	
	기정	⑥-1	하늘을 위한 사랑의 화합대	광장(내)	19.62	-	-	1기	조형물-1
	기정	⑥-2	꿈과 희망의 화합대	광장(내)	3.24	-	-	1기	조형물-2
	기정	⑥-3	대지의 아들	광장(내)	6.50	-	-	1기	조형물-3
	기정	⑥-4	가족이 야기	광장(내)	2.64	-	-	1기	조형물-4
	기정	⑥-5	술과가족	광장(내)	11.25	-	-	1기	조형물-5
	기정	⑥-6	공룡나라	광장(내)	18.68	-	-	5기	조형물-6
	기정	⑥-7	곤충동산	광장(내)	14.33	-	-	4기	조형물-7
	기정	⑥-8	사슴동산	광장(내)	2.80	-	-	1기	조형물-8
	기정	⑥-9	이과광의 백일몽	광장(내)	0.80	-	-	1기	조형물-9
	기정	⑥-10	물위의련선	광장(내)	20.00	-	-	1기	조형물-10
	기정	⑥-11	The Gate	광장(내)	2.04	-	-	1기	조형물-11
	기정	⑥-12	가슴아프다	광장(내)	-	-	-	1기	조형물-12
	기정	⑥-13	희생의사슬	광장(내)	12.25	-	-	1기	조형물-13
	기정	⑥-14	설화	광장(내)	1.50	-	-	1기	조형물-14
	기정	⑥-15	터	광장(내)	-	-	-	1기	조형물-15
	기정	⑥-16	꿈속의고향	광장(내)	1.00	-	-	1기	조형물-16
	기정	6-1	광주독립운동기념탑	광장(내)	478.18	-	-	1기	
	기정	17	야외무대	광장(내)	245.00	-	-	1기	
	기정	②	막주조과고라	야외무대	-	-	-	1기	
	기정	18	화훼원	-	707.00	-	-	1기	
	기정	⑥-17	안중근동상		4.00	-	-	1기	H4.5m
	기정	⑥-18	흥축과분출	수변무대	-	-	-	1기	조형물-17
	기정	⑥-19	Happy Day	수변무대	-	-	-	1기	조형물-18
	기정	⑥-20	어울림	수변무대	-	-	-	1기	조형물-19
기정	⑥-21	빛으로	수변무대	-	-	-	1기	조형물-20	
기정	⑥-22	울림	수변무대	-	-	-	1기	조형물-21	
기정	⑥-23	한생명	수변무대	-	-	-	1기	조형물-22	
기정	⑥-24	생명의빛	수변무대	-	-	-	1기	조형물-23	
기정	⑥-25	도시의빛	수변무대	-	-	-	1기	조형물-24	
변경	⑥-25	도시인간	수변무대	-	-	-	1기	명칭 변경	
기정	21	에너지전시관		993.60	993.60	993.60	1동	건축물	
편의시설	변경		소계		7,435.10	259.78	294.28	7동(40기)	
	기정	7	화장실	전 지역	220.00	242.28	242.28	6동	
	변경	8	주차장		7,090.10	-	-	-	3개소
	기정	9	전명카페	광장(내)	107.00	17.50	52.00	1동	
	기정	⑦	음수대	전 지역	-	-	-	6기	
	기정	⑧	휴지통	전 지역	-	-	-	26기	
기정	⑨	세족장	지암로변	-	-	-	4기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시설면적(㎡)	건축면적(㎡)		건물층수(공작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기정	19	푸드트럭전기자전거인전동보장구충전기	주차장 옆	18.00	-	-	1기	
	기정	⑩			-	-	-	1기	
	기정	⑩			-	-	-	2기	
	기정		소계		1,114.40	514.05	514.05	3동(400기)	892.5m
	기정		소계		1,114.40	514.05	514.05	3동(403기)	892.5m
	기정	10	테니스장관리사	광장(내)	-	52.29	52.29	1동	광장(내)포함
	기정	11	관리사무소		164.40	164.40	164.40	1동	
	기정	12	공동구중앙사역실		950.00	297.36	297.36	1동	
	기정	⑩-1	안내관	전 지역	-	-	-	4기	
	변경	⑩-1	안내관	전 지역	-	-	-	7기	에너지파크종합안내
	기정	⑩-2	방향표지판	전 지역	-	-	-	7기	
	기타시설	기정	⑩	블라드	주차장 변	-	-	-	3기
기정		⑪	자전거보관대	광장(내)	-	-	-	6기	
기정		⑬	국기계양대		-	-	-	6기	
기정		⑭	웬스		-	-	-	123.5m	
기정		⑮	목교	호수(내)	-	-	-	1기	
기정		⑮-1	루미로드	호수(내)	-	-	-	1기	
기정		⑮	목도	호수(내)	-	-	-	36m	
기정		⑰-1	난간(A형)		-	-	-	110m	
기정		⑰-2	난간(B형)		-	-	-	622m	
기정		⑱-1	장식등		-	-	-	38기	
기정		⑱-2	공원등		-	-	-	59기	
기정		⑳-3	오주등		-	-	-	6기	
기정		㉑-4	블라드 등		-	-	-	53기	
기정		㉑-5	투스등		-	-	-	50기	
기정		㉑-6	수목등		-	-	-	149기	
기정		㉑	시계탑		-	-	-	1기	
기정		㉒	스마트 가로등	전 지역	-	-	-	8기	
기정		㉓	스마트 벤치	전 지역	-	-	-	8기	
기타시설	기정		소계		-	-	-	10기	
	기정	13	보행육교		-	-	-	1기	
	기정	⑩-1	Sitting Wall	광장(내)	-	-	-	1기	
기타시설	기정	⑩-2	스탠드	전 지역	-	-	-	1,014m	
	기정	⑩-3	조형벽체	전 지역	-	-	-	8기	
녹지(호수)	기정		녹지		107,158.32				62.89%
	변경		녹지		107,130.05				62.88%

3. 도로 결정조사

구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4,427.9				
소계						1,198.2				
기정	소로	1	1	10.0	65.0	838.3		광장 - 13	광장 - 4	
기정			2	12.0	29.5	359.9		광장 - 14	Space Frame	
소계						13,228.7				
기정	소로	3	1	3.0	77.0	231.0	전일로	광장 - 2	다목적운동장	
기정			2	3.0	183.0	549.0	연결로	광장 - 2	광장 - 3	자전거로
기정			3	3.0	152.0	456.0	연결로	소로 3 - 1	소로 3 - 4	
기정			4	3.0	57.0	171.0	연결로	광장 - 3	다목적운동장	

기정	5	3.0	212.0	636.0	연결로	광장 - 1	광장 - 2	
기정	6	3.0	160.0	480.0	연결로	소로 3 - 3	다목적운동장	
기정	7	3.0	167.0	501.0	연결로	소로 3 - 4	다목적운동장	
기정	9	3.0	122.0	366.0	연결로	광장 - 3	광장 - 5	자전거로
기정	10	3.0	91.0	273.0	연결로	광장 - 5	광장 - 9	
기정	11	3.0	260.0	780.0	연결로	광장 - 5	광장 - 5	
기정	12	3.0	113.0	339.0	연결로	광장 - 6	북측경계	
기정	13	3.0	29.0	87.0	연결로	광장 - 6	휴게쉼터	
기정	14	3.0	207.0	621.0	연결로	소로 3 - 50	엑스포주제영상관	
기정	15	3.0	8.0	33.1	연결로	광장 - 8	광장 - 9	
기정	16	2.0	50.0	100.7	연결로	소로 3 - 14	광장 - 8	
기정	17	1.5	195.0	292.5	연결로	소로 3 - 1	소로 3 - 4	지압로
기정	18	1.5	218.0	327.0	연결로	소로 3 - 1	광장 - 1	지압로
기정	19	3.0	23.0	69.0	진입로	광장 - 7	소로 3 - 13	
기정	20	3.5	155.0	542.5	연결로	소로 3 - 21	소로 3 - 14	
기정	21	3.0	30.0	90.0	진입로	광장 - 6	엑스포주제영상관	
기정	22	2.0	55.0	110.0	연결로	광장 - 4	소로 3 - 26	
기정	23	2.0	17.0	34.0	연결로	소로 3 - 39	광장 - 10	
기정	24	2.0	17.0	34.0	연결로	광장 - 11	소로 3 - 39	

구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25	3.0	12.0	36.0	연결로	소로 3 - 44	화장실	
기정			26	2.5	151.0	377.5	연결로	광장 - 4	소로 3 - 35	
기정			27	2.5	37.0	92.5	연결로	소로 3 - 43	소로 3 - 34	
기정			28	2.5	15.0	37.5	연결로	소로 3 - 34	소로 3 - 47	
기정			29	2.5	15.0	37.5	연결로	소로 3 - 37	소로 3 - 47	
기정			30	2.5	17.0	42.5	연결로	광장 - 12	소로 3 - 54	
기정			31	2.5	25.0	62.5	연결로	광장 - 5	광장 - 12	
기정			32	2.0	24.0	48.0	연결로	광장 - 4	광장 - 4	
기정			33	2.0	25.0	50.0	연결로	광장 - 4	광장 - 4	
기정			34	2.7	49.0	132.3	연결로	소로 3 - 40	소로 3 - 44	
기정			35	3.4	103.0	350.2	진입로	소로 3 - 35	소로 3 - 35	
기정			36	3.0	30.0	90.0	연결로	소로 3 - 4	소로 3 - 35	
기정			37	3.0	70.0	210.0	연결로	소로 3 - 41	광장 - 4	
기정			38	3.0	86.0	258.0	연결로	소로 3 - 3	소로 3 - 3	
기정			39	3.0	35.0	105.0	연결로	광장 - 4	광장 - 16	
기정	소로 3		40	3.5	27.0	94.5	연결로	광장 - 5	소로 3 - 47	
기정			41	3.5	27.0	94.5	연결로	소로 3 - 47	광장 - 5	
기정			42	4.0	47.0	188.0	연결로	광장 - 1	광장 - 4	
기정			43	4.0	39.0	156.0	연결로	광장 - 5	광장 - 15	
기정			44	4.0	84.0	336.0	연결로	광장 - 15	광장 - 16	
기정			45	4.7	314.0	1475.8	진입로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기정			46	6.4	85.0	544.0	진입로	광장 - 5	광장 - 16	
기정			47	6.7	65.0	435.5	연결로	놀이마당	광장 - 9	
기정			48	2.0	12.5	25.0	연결로	소로 3-35	소로 3-11	
기정			49	2-10	79.0	298.8	연결로	체육관	광장 - 13	
기정			50	4.0	22.0	88.0	진입로	주차장	에너지전시관	
기정			50	4.0	40.0	159.8	진입로	주차장	에너지전시관	
기정			51	4.5	49.0	220.5	연결로	소로 1 - 2	소로 3 - 15	
기정			52	5.0	30.0	149.0	진입로	주차장	에너지전시관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서구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21. 9. 1.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52-14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사업
 - 명 칭 : 매월동 952-14번지 냉동창고 신축 공사
- 사업 규모
 - 부지면적 : 865.20㎡
 - 건축규모 : 건축면적 498.53㎡, 연면적 498.53㎡
- 사업시행자
 - 성 명 : 김대일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63번길 12
 - 성 명 : 박찬경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21, 104동 411호
-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0.
-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주소, 성명

토지조사									
연번	소계지		지목	토지		권리자			
	동구분	권 리 의 소계지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성명	주소	
1	매월동	952-14	대	865.20	865.20	김대일 박찬경	남구 서문대로 663번길 12	서구 마재로-21, 104동 411호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9호선)사업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21. 9. 3.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7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9호선) 사업
 - 명 칭 :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 (화장) 공사
- 사업 규모

시설명	사업량		비고
	총 규모	금회시행	
도로 (중로1-49호선)	L=680.0m, B=20.0m	L=93.0m, B=2.0m, A=204.0㎡	

- 사업시행자
 - 법인명 : HDC아이엔콘스(주)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 분당아이파크 102동 8층
 - 대표자 : 이형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 분당아이파크 102동 8층
- 사업시행기간 : 2021. 9. 3. ~ 2023. 9. 3.
-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주소, 성명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27호

도시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광주 도시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 내 냉동창고 신축 사업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화정동	134-48	장	959.0	42.0	에이치디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자일로 239, 102동 8층(경자동, 분당아이파크)			
2	화정동	23-325	대	1,240.0	44.0	아이콘스주식회사				
3	화정동	23-27	대	1,994.0	118.0					
합 계				4,143.0	204.0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31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7호선)사업으로 미래문화산업 신축에 따른 감속차로 개설(확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9. 7.

광주광역시

1. 사업시행지

가.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229-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7호선)사업

나. 명 칭 : 미래문화산업 신축에 따른 감속차로 개설(확장)공사

3. 사업 규모

구 분		사 업 규 모		비 고
시설명	세부시설	총 규모(m)	금회 시행	
도로	대로2-7	L=7,200m, B=30~33m	L=60.0m, B=3.0m, A=474.0㎡	건고 488(' 85. 11. 12.)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지산마을길 8(생용동)

나. 성 명 : 미래문화산업 주식회사 대표 김영관

5. 사업시행기간 : 2021. 9. 7.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 불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북구	용전동 1229-13	구	3,372	235	국 (농림축산식품부)				
2		용전동 1229-14	도	4,631	164					
3		용전동 1229-25	도	641	75					
합 계				8,644	474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34호

도시관리계획(황룡강대상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황룡강대상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광산구 공원녹지과

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 9. 6.

광주광역시

I. 황룡강대상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169	황룡강대상공원	근린공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암동 54-7 일원	31,834	31,852	증)18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 1998. 09. 15.(광고-122호)
- 조성계획 결정 : 2006. 12. 15.(광고-178호)
- 조성계획 최종 : 2021. 1. 30.(광고-33호)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고시 : 2021. 8. 23.(광고-314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신청부서 : 市 공원녹지과
- 변경 사유
 - 구역경계 변경없는 토지합병과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함.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기 정	변경	비 고
시설률(법정 40%이하)	9.81%	9.80%	
건폐율(법정 15%이하)	0.00%	0.00%	
설치제한시설율(20%이하)	0.00%	0.00%	

II. 도시계획시설(황룡강대상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부지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	부지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총 계	31,834.00	-	-	-	31,852.00	-	-	-	증) 18㎡		
시설소재	3,123.03	-	-	-	3,123.03	-	-	-			
기 반 시설	소계	2,524.96	-	-	2,524.96	-	-	-			
	도로	2,454.01	-	-	2,454.01	-	-	-			
	광장	70.95	-	-	70.95	-	-	-			
조정시설	-	-	-	-	-	-	-	-			
휴양시설	-	-	-	-	-	-	-	-			
유희시설	-	-	-	-	-	-	-	-			
운동시설	-	-	-	-	-	-	-	-			
교양시설	-	-	-	-	-	-	-	-			
편익시설	598.07	-	-	-	598.07	-	-	-			
공원관리시설	-	-	-	-	-	-	-	-			
녹지 및 기타	28,710.97	-	-	-	28,728.97	-	-	-	증) 18㎡		
시설률 (법정 40%)	(3,123.03 / 31,834)×100 =9.81% (공원면적의 40%이하)				(3,123.03 / 31,852)×100 =9.80% (공원면적의 40%이하)				시행규칙 11조 [별표4]		
건폐율 (법정 15%)	(0 / 31,834)×100 =0.00% (공원면적의 15% 이내)				(0 / 31,852)×100 =0.00% (공원면적의 15% 이내)				도시공원지침 4-1-3		
설치제한 시설율 (법정 20%)	(0.00 / 3,123.03)×100 =0.00% (시설면적 20% 이하)				(0.00 / 3,123.03)×100 =0.00% (시설면적 20% 이하)				시행규칙 11조5항		

※ 설치제한 : 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청소년수련시설 · 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 모두 합한 면적

2.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시 설 구 분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	31,834.00	31,852.00	-	-	-	-	
시설소계		3,123.03	3,123.03	-	-	-	-	시설률 9.81% 시설률 9.80%
도로 및 광장	소 계	2,524.96	2,524.96	-	-	-	-	
	도로	2,454.01	2,454.01	-	-	-	-	
	광장	70.95	70.95	-	-	-	-	
조경시설	-	-	-	-	-	-	-	
휴양시설	-	-	-	-	-	-	-	
유희시설	-	-	-	-	-	-	-	
운동시설	맨손운동	-	-	-	-	-	-	
교양시설	-	-	-	-	-	-	-	
편익시설	-	598.07	598.07	-	-	-	-	
공원관리시설	-	-	-	-	-	-	-	
녹 지	-	28,710.97	28,728.97	-	-	-	-	녹지율 90.19% 녹지율 90.20%

3. 세부시설결정조서

구 분	부호	시설명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공작물	부지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공작물	
부지면적				31,834.00	-	-	31,852.00	-	-	증 18㎡
시설총계				3,123.03	-	-	3,123.03	-	-	
도로 및 광장	소 계			2,524.96	-	-	2,524.96	-	-	
	도로			2,454.01	-	-	2,454.01	-	-	
	1-1 광장			70.95	-	-	70.95	-	-	
조경시설				-	-	-	-	-	-	
휴양시설				-	-	-	-	-	-	
운동시설				-	-	-	-	-	-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598.07	-	-	598.07	-	-	
관리시설				-	-	-	-	-	-	
녹지 및 기타				28,710.97	-	-	28,728.97	-	-	증 18㎡

4.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등급	변경구분	구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정	중점	비고
합계	기정	총 계			1,179.00	2,454.01	-			
	기정	소 계			1,179.00	2,454.01	-			
소로	기정	3	1	5.91	61.91	366.16	대상지 경계	대상지 경계		
	기정	3	2	2.0	87.95	175.90	소로1	소로1		
	기정	3	3	1.5	37.98	56.97	소로2	소로4		
	기정	3	4	1.5	120.59	180.89	소로2	대상지 경계		
	기정	3	5	1.5	63.28	94.92	소로1	소로1		
	기정	3	6	1.5	72.05	108.07	소로5	소로5		
	기정	3	7	2.1	45.74	92.10	대상지 경계	대상지 경계		
	기정	3	8	2.0	96.98	193.96	소로7	소로10		
	기정	3	9	2.0	15.87	31.74	소로8	대상지 경계		
	기정	3	10	2.0	180.07	360.13	대상지 경계	소로12		
	기정	3	11	2.0	23.65	47.29	소로10	대상지 경계		
	기정	3	12	2.0	46.36	92.72	대상지 경계	대상지 경계		
	기정	3	13	2.0	268.97	537.94	소로12	대상지 경계		
	기정	3	14	2.0	24.96	49.92	소로13	대상지 경계		
	기정	3	15	2.0	32.65	65.30	소로13	대상지 경계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36호

도시관리계획(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남구(회계과, 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 9. 7.

광 주 광 역 시 장

I. 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3	유안공원	근린공원	남구 봉선동 134번지 일원	20,675	-	20,675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 1985.11.12.(건고 제1985-488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 : 2002.04.08.(광고 제2002-32호)
-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 2020.09.15.(광고 제2020-387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신청부서 : 남구 회계과
- 신청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른 유안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 변경사유
 -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공원 일부를 제척하고, 인근 대 체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설률 (법정 40%이하)	29.16%	29.45%	
설치제한면적 (법정 20%이내)	27.77%	27.50%	
건폐율 (법정 10%이하)	0.53%	0.53%	

II. 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0,675	-	-	-	84	20,675	-	-	95
시설소계	6,030.3					6,090.0			증 59.7㎡
기반 시설	소계	3,141.3				3,201.0			증 59.7㎡
	도로	1,867.5				1,986.4			증 118.9㎡
	광장	1,273.8				1,214.6			감 59.2㎡
조경시설	-			22	-				24
휴양시설	794.1			52	794.1				56
유희시설	310.1				310.1				
운동시설	1,675.1			7	1,675.1				13
교양시설									

공인관리시설	109.7	1	109.7	109.7		109.7	1	109.7	109.7		
녹지 및 기타	14,644.7					14,585.0					감 59.7㎡
시설률 (법정 40%)	(6,030.3 / 20,675) × 100 = 29.16% (공원면적의 40%이하)				(6,090.0 / 20,675) × 100 = 29.45% (공원면적의 40%이하)				(시행규칙 11조) [별표]		
설치 제한 면적 (법정 20%)	(1,675.1 / 6,030.3) × 100 = 27.77% (시설부지면적의 20% 이내)				(1,675.1 / 6,090.0) × 100 = 27.50% (시설부지면적의 20% 이내)				2005.12.30 공원시설 설치면적 제한 개정전 결정사항		
건폐율 (법정 20%)	(109.7 / 20,675) × 100 = 0.53% (공원면적의 20% 이내)				(109.7 / 20,675) × 100 = 0.53% (공원면적의 20% 이내)				(조례제5항) [별표 16의 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사실명	위치	부지 면적 (㎡)	건축물 면적 (㎡)	부호	사실명	위치	부지 면적 (㎡)	건축물 면적 (㎡)	
관리시설	소계			109.7	109.7	소계			109.7	109.7	-
	10	관리사무소		109.7	109.7	10	관리사무소		109.7	109.7	
											52m 신설
녹지 및 기타	소계			14,644.7	-	소계			14,564.8	-	감 59.7㎡
	녹지	전지역		14,644.7		녹지	전지역		14,564.8		감 59.7㎡

2.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사실명	위치	부지 면적 (㎡)	건축물 면적 (㎡)	부호	사실명	위치	부지 면적 (㎡)	건축물 면적 (㎡)	
총계				20,675	84				20,675	85	증 59.7㎡
시설소계				6,030.3	84				6,000.0	85	증 59.7㎡
기반시설	소계			3,143.3	-	소계			3,201.0	-	증 59.7㎡
	도로	전지역		1,867.5		도로	전지역		1,864.4		
	1	중앙광장		573.1		1	중앙광장		573.1		
	2	광장(총괄)		700.7		2	광장(총괄)		644.5		
	2-1	전입광장1		156.5		2-1	전입광장1		6		폐지
2-2	전입광장2		163.4		2-2	전입광장2		163.4			
2-3	전입광장3		380.8		2-3	전입광장3		380.8			
					2-4	커뮤니티광장		97.3			신설
조경시설											24
①	사각쉼터	광장 및 휴게소 내		7	①	사각쉼터	광장 및 휴게소 내		7		폐지
②	그늘시설	공원 내		14	②	크라운 광	공원 내		14		
③	수목보호용 의자	광장, 휴게소 등 선 내		1	③	수목보호용 의자	광장, 휴게소 등 선 내		1		
④	공원표지석	중앙광장 내		1	④	공원표지석	중앙광장 내		1		
					⑩	세족대	커뮤니티 광장 내		1		신설
					⑩	시상안 내판	커뮤니티 광장 내		1		신설
휴양시설				794.1		소계			794.1		감 283㎡
3	휴게소			794.1		3	휴게소		794.1		
3-1	휴게소-1			622.6		3-1	휴게소-1		622.6		사각쉼터 2기
3-2	휴게소-2			171.5		3-2	휴게소-2		171.5		사각쉼터 2기
⑤	앉음벽	광장 내		6	⑤	앉음벽	광장 내		6		13
⑥	평의자	사각쉼터, 그늘시설 내		35	⑥	평의자	사각쉼터, 그늘시설 내		35		27
⑦	등이자	녹지 내		11	⑦	등이자	녹지 내		11		16
유체시설				310.1		소계			310.1		2
4	어린이 놀이터			237.7		4	어린이 놀이터		237.7		
⑧	놀이구	어린이 놀이터 내		2	⑧	놀이구	어린이 놀이터 내		2		2
5	모래사장			72.4		5	모래사장		72.4		
운동시설				127.1		소계			127.1		13
6	베드민턴장			444.8		6	베드민턴장		444.8		
7	농구장			532.2		7	농구장		532.2		
8	게이트볼장			583.1		8	게이트볼장		583.1		
9	체력단련장			119.0		9	체력단련장		119.0		
⑨	운동기구	체력단련장 내		7	⑨	운동기구	체력단련장 내		7		13

3.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합계						1,867.5				증 118.9㎡
당초 변경	계						313.6				
당초 변경	소로	2	1	8	39.2	313.6	진입로	부지남측 경계	지하주차장		
당초 변경	계						1,553.9				증 118.9㎡
당초 변경	소로	3	1	6.0	38.6	231.6	시설연결	광장 2-3	광장 1		
당초 변경			2	4.0	33.1	132.4	시설연결	휴게소3-1	광장 1		
당초 변경			3	4.0	35.8	143.2	진입로	부지남측 경계	광장 1		
당초 변경			3	4.0	20.8	83.2	시설연결	광장2-4	광장 1		
당초 변경			4	4.2	22.3	208.6	진입로	주차장출입구	소로3-1		
당초 변경			5	2.0	71.9	143.8	시설연결	광장2-1	휴게소3-1		
당초 변경			5	2.0	41.0	82.0	진입로	부지남측 경계	휴게소3-1		
당초 변경			6	2.0	21.0	42.0	시설연결	소로3-5	소로3-7		
당초 변경			7	2.0	84.7	169.4	시설연결	소로3-5	소로3-1		
당초 변경			7	2.0	60.9	121.8	진입로	소로3-11	소로3-1		
당초 변경			8	2.0	37.8	75.6	시설연결	광장2-2	휴게소3-1		
당초 변경			9	2.0	98.0	196.0	시설연결	소로3-3	광장 2-3		
당초 변경			10	2.0	54.9	109.8	시설연결	광장2-2	소로3-3		
당초 변경			11	2.5	40.6	101.5	시설연결	소로3-7	화장실		
당초 변경			11	2.5	35.0	86.6	진입로	부지남측 경계	화장실		
당초 변경			12	2.0	60.0	120.0	진입로	부지남측 경계	광장2-3		
당초 변경			13	2.0-3.5	72.5	172.2	시설연결	광장2-2	광장2-4		
당초 변경			14	2.0	26.5	53.0	진입로	부지남측 경계	소로3-9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1-69호

광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 및 시행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동구 증장로4가 32번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도면 고시 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 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9.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가. 광주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층장1	주차장	동구 층장로4가 32번지	-	증544.5	544.5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층장1	주차장	· 신설 · 면적 : 544.5㎡	· 층장로4가 층상동행정복지센터 일대 주차난 해소와 주변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1-70호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관리계획(도로,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83-1번지 일원 조대부고 주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소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 및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9.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733	6~8	국지도로	168	학동 680-5	학동 683-1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733	· 신설 · L=168m, B=6~8m	· 개선현황도로를 급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 소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조대1	소공원	학동 681-4번지 일원	-	증)211	211		

- 소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조대1	소공원	· 신설 : A = 211㎡ · 위치 : 학동 681-4번지	·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제공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해 소공원 결정

○ 공원조성계획

- 공원조성계획 조서

시설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물(㎡)		건축물수(공작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211.00	100.0	-	-	-	
시설면적계			39.20	18.58	-	-	-	시설율 18.58%
도로 및 광장			39.20	18.58	-	-	-	
소계			39.20	18.58	-	-	-	
도로			22.86	10.83	-	-	-	
광장			16.34	7.74	-	-	-	
1-1 진입광장			16.34	7.74	-	-	-	
휴양시설			-	-	-	-	-	
2-1 벤치			-	-	-	-	-	
녹지			171.80	81.42	-	-	-	녹지율 81.42%
3-1 녹지			171.80	81.42	-	-	-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구분	구도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산책로	3	1	1.2	21.44	22.86	681-3도	681-3도	

3.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116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9. 8.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목록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조서

구분	구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승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346	신촌동 1022-2도	신촌동 981-1도	일반도로	-	전고96호 1986-07-14	
변경	(승정) 소로	1	8	6~10	국지도로	346	신촌동 1022-2도	신촌동 981-1도	일반도로	-	전고96호 1986-07-14	사유지 제척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 및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승정) 소로 1-8호선	(승정) 소로 1-8호선	· 도로 부지 외 사유지 제척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차원에서 개선(확장) 계획이 없는 도로 경계변 소규모 사유지 제척 및 실효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광산구 도시계획과에 비치)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600호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위한 열람공고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1. 9. 3.

광주광역시장

1. 신청인의 성명 · 주소

- 성 명 : 광주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2.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 면 적 : [당초] 277,765.4㎡ , [변경] 277,765.4㎡
- ※ 203정거장 주변 현장 작업공간 및 보행자 통로 확보
- ※ 일시보상 면적 증가(증 35㎡)

3. 노선의 기점·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위치

사업명	위 치	시설내용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점 : 광주 서구 유촌동 종 점 : 광주 북구 중흥동 238정거장 : 광주 서구 유촌동 201정거장 : 광주 서구 치평동(시정/한글은행 사거리) 202정거장 : 광주 서구 치평동(운천초교) 203정거장 : 광주 서구 치평동(상무역) 204정거장 : 광주 서구 쌍촌동(금호지구입구 교차로) 205정거장 : 광주 서구 금호동(호반APT 사거리) 206정거장 : 광주 서구 금호동(광급사거리) 207정거장 : 광주 서구 풍암동(월드컵경기장) 208정거장 : 광주 서구 풍암동(풍암대주2차APT교차로) 209정거장 : 광주 서구 풍암동(원광대병원입구) 210정거장 : 광주 남구 주월동(주월2동주민센터) 211정거장 : 광주 남구 주월동(백운광장) 212정거장 : 광주 남구 주월동(미래아동병원교차로) 213정거장 : 광주 남구 방림동(양림2차입류면시아교차로) 214정거장 : 광주 동구 화동(남광주역) 215정거장 : 광주 동구 서석동(조선대입구 교차로) 216정거장 : 광주 동구 지산동(지산사거리) 217정거장 : 광주 동구 산수동(두암지구입구 교차로) 218정거장 : 광주 북구 풍향동(교육대학/시방시장) 219정거장 : 광주 북구 중흥동(중흥삼거리) 차량기지 : 광주 서구 유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선 17km 정거장 20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

4. 도시철도 건설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 2019. 6. 20. ~ 2023. 12. 31.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 21. 9. 3. ~ ' 21. 9. 24. (20일 이상)

6. 공람 및 의견 제출장소

-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마루동, 광주도시철도공사) 7층 공사1과
- (☎062-613-6625, 062-613-6627)
- 공람도서(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토지조서, 편입부지도면) : 공람장소 비치

7. 기타사항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사업」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1-1156호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광주 동구 지산동 315-1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개설공사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받기 위하여 관계도서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공고 합니다.

2021. 9.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15-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66, 소로3-710, 소로2-521, 소로2-517) 개설공사

3. 사업개요

노선명	연장(m)	폭원(m)	비 고
중로3-166	50	14	
소로3-710	170	2	
소로2-521	140	8-12	
소로2-517	60	8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227, 3층(지산동)
- 성 명 :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김창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6. 도시계획시설 평면계획도 :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7. 토지편입 조서 : 붙임 참조

8. 열람공고기간

- 열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062-608-2753)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편입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 부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계	중로 3-166	소로 2-517	소로 2-521		
합계 (25필지)					3,531	725	501	1,966	339	
1	산수동	0-4가	가	179	143	143				-
2	산수동	25-1전	전	1,969	2	2				강충국 외 74인
3	산수동	25-5대	대	226	1	1				강만수 외 4인
4	지산동	315-15도	도	238	111		51	60		지산동지역주택조합
5	지산동	315-9도	도	481	84		84			광주광역시동구
6	지산동	316-15도	도	140	109		109			광주광역시동구
7	지산동	316-4수	수	166	92	92				광주광역시
8	지산동	316-6대	대	167	5		5			지산동지역주택조합
9	지산동	317-19대	대	7,506	279		279			지산동지역주택조합
10	지산동	317-23대	대	1,779	62		62			지산동지역주택조합
11	지산동	317-25도	도	152	6		6			지산동지역주택조합
12	지산동	317-28대	대	178	97	97				지산동지역주택조합
13	지산동	317-29대	대	161	115	115				지산동지역주택조합
14	지산동	317-36도	도	548	548	10	538			-
15	지산동	317-37도	도	95	95		95			-
16	지산동	317-39도	도	293	249	171	78			광주광역시
17	지산동	317-3대	대	297	164	164				지산동지역주택조합
18	지산동	317-6대	대	139	85	85				지산동지역주택조합
19	지산동	산1-10일	일	126	72	33	39			한국건설주식회사 에이치케이레저
20	지산동	산1-11도	도	441	441	210	231			한국건설주식회사 에이치케이레저
21	지산동	산1-17일	일	210	193	1	192			광주광역시동구
22	지산동	산1-18일	일	197	197		197			한국건설주식회사 에이치케이레저
23	지산동	산3일	일	10,922	279			279		지산동지역주택조합
24	산수동	산67-11일	일	97	93	93				한국건설주식회사 에이치케이레저
25	산수동	산67-6일	일	859	9	9				강충국 외 74인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1-1157호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 공고**

광주 동구 산수동 산6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동고제2020-101호)한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관계도서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공고 합니다.

2021. 9.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24-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산수동 한국아텔리움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3-167, 소로1-387, 소로2-521) 개설공사
3. 사업개요

노 선 명	사 업 규 모			비 고
	총 규모(m)	노선폭(m)	급회시행(m)	
중로3-167호선	L=51m	12m	L=51m	
소로1-387호선	L=100m	10m	L=100m	
소로2-521호선	L=646m	8~11m	L=149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 17, 상가동 201호
 - 성 명 : 한국건설주식회사 대표 정진이(당초 대표 정철준외 1명)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예정일 : 2020. 11. 10.
 - 준공예정일 : 2024. 12. 30.(당초 2022. 12. 30.)
 6. 도시계획시설 평면계획도 및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7. 열람공고기간
 - 열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062-608-2753)
-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578호

**일곡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일곡근린공원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일곡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08.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 공 원 명 : 일곡근린공원
 - 위 치 : 북구 일곡동 산116번지 일원
 - 면 적 : 1,076,134.1㎡
 - 조성계획(변경)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 등

2. 열람기간 및 장소 : 2021년 9월 08일 ~ 2021년 9월 21일(14일간)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62-410-6446)
3.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fax)062-510-1578
4.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1-1825호

2030 광산구 도시경관계획 수립 공고

2030 광산구 도시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립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일반인에게 열람 하고자 합니다.

2021. 9. 8.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열람사항 : 2030 광산구 도시경관계획
2. 주요내용
 - 계획구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구역 전체(약 222.9km²)
 - 기준연도 : 2019년
 - 목표연도 : 단기 2024년, 장기 2030년
 - 계획내용
 - 미 래 상 : 「빛나라! 광산구」
 - 경관구조 : 광산구의 골격을 토대로 경관 권역·축·거점 설정
※ 4개 경관권역, 5개 경관축, 5개 경관거점 설정
 - 별도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경관계획 수립
※ 송정역세권(기지정), 영산강, 어등산, 고려인마을 중점경관관리구역
 - 경관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수립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21. 9. 8. ~ 2021. 10. 8.)
4.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062-960-8524)
5.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